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56
----------	------

발의연월일 : 2025. 3. 26.

발의자 : 이만희 · 서천호 · 구자근

김기웅 · 엄태영 · 박형수

유용원 · 곽규택 · 박충권

김상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으며, 5년간 합계 1억원의 증여세 감면 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자경농민의 가업 상속 장려를 통한 농업인력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증여세 감면 한도를 5년 간 합계 5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및 제133조제4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3조제4항 전단 중 “1억 원”을 “5억 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